

Deloitte.

세무 뉴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 소득세 적용에 관한 결의를 발표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유효됨

2023년 12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 소득세 적용에 관한 결의를 발표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유효됨

2023년 11월 29일에 제15대 베트남 국회는 글로벌세원잠식방지 (GloBE) 정책에 따라 추가 법인 소득세 적용에 관한 제07/2023/QH15호 결의를 발표했으며, 소득산입규칙 ("IIR") 및 적격소재국추가세 ("QDMTT")를 포함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개 및 개요

개념 및 배경

- 글로벌 최저한세 ("GMT" 또는 "Pillar 2")는 소득이전 및 불건전한 세금 경쟁에 맞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의 포괄적 이행체계/G20에서 제안된 솔루션이다. Pillar 2는 범위내 다국적 기업 ("MNE")이 운영되는 모든 국가에서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세금 규칙을 명시한다.
- 베트남 정부는 GMT에 따른 추가 법인세 적용 관련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 시행에 대한 지침은 관할 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베트남이 적용하는 주요 규칙

따라서 베트남은 2가지 주요 규칙을 적용한다.

- 적격소재국추가세 (QDMTT)
- 소득산입규칙 (IIR)

GMT 적용 대상

베트남에서 GMT 적용 범위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중 연결기준 매출 EUR750 mil 이상인 MNE의 구성기업 (기업, 조직, 고정 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MNE는 최상위모회사와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지 않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 또는 고정 사업장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된다.

전반적인 영향 분석

결의에 따라 GMT 규정의 적용은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MNE의 세금 의무뿐만 아니라 관련 신고 및 준수 의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추가 납세 의무

-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 MNE의 구성 기업의 경우: 베트남에 **실효세율 (Effective Tax Rate, ETR) (*)** 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법인세 (추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 베트남 MNE의 모회사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투자국의 법령에 따라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을 15% 미만으로 적용하는 해외 구성기업이 창출한 소득에 추가 법인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추가 신고 의무

- 현행 CIT 확정신고 의무외에도 GMT 규정에 따라 신고서 및 설명 부록 작성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된다.
- 신고기간:
 - QDMTT: 납세자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IIR: 납세자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첫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

(*) 실효세율 (ETR)은 OECD 공식에 따라 해당국가에 소재한 MNE의 모든 구성기업의 세금과 소득을 합산하는 원칙으로 각 국가별로 계산된다. (4페이지에 자세한 공식 참조)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 소득세 적용에 관한 결의를 발표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유효됨



결의의 중요한 내용

1. 일반 원칙

적용 범위

- 유효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유효되며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 적용 대상:** 해당 회계연도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이상에 연결기준 매출 EUR750 million 이상인 MNE의 구성기업
- 제외 대상:** 결의는 GloBE 규정에 따른 대상을 제외한다. (예: 최상위모회사가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관, 연금기금, 투자 기금, 부동산 투자기관 등이고 제외대상에 의해 85% 이상의 자산가치를 소유된 단체등)

정의

결의는 다국적 기업 (Multinational Enterprise), 최상위모회사 (Ultimate Parent Entity), 구성 기업 (Constituent Entity), 허락된 재무회계 기준 (Accept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위임된 재무회계 기준 (Authoriz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등 GloBE 규칙에 따른 주요 용어 및 정의를 포함한다. 동시에 모델 규칙, 주석, 합의된 행정 지침 등을 포함한 OECD의 GloBE 규정을 직접 언급한다.

소규모 감소 (DE MINIMIS)

QDMTT 및 IIR에 적용 가능하며, 모든 구성 기업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국가의 추가 세금은 0으로 간주된다:

- (i) 해당 국가의 평균 GloBE 소득은 EUR 10 million 미만이다; 및
- (ii) 해당 국가의 평균 GloBE 이익은 EUR 1 million 미만이거나 평균 GloBE 손실이 있다.

환율

결의에 의한 소득 및 소득 기준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환율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한 수익 및 소득이 발생한 해의 직전 연도의 12월 평균환율이다.

안전 조항 (Safe Harbour)

- 전환기간 (2024 - 2026)동안 국가별보고서 ("CbCR")에 따른 Safe Harbour:**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면 추가세가 0(영)으로 간주된다.
 - 적격 CbCR을 기준으로 총 소득이 EUR 10 million 미만 이고 세전 이익(손실)이 EUR 1 million 미만이다.
 - 단순화된 ETR은 2023년과 2024년에 15% 이상, 2025년에는 16% 이상, 2026년에는 17% 이상이다.
 - 세전 이익(손실)은 GloBE 규정에 따라 계산된 실질 기반 소득제외 금액과 같거나 미만이다.

단순화된 계산에 따른 Safe harbour:

구성 기업은 Routine profits test, De Minimis test 및 ETR test를 포함한 단순화된 계산 Safe harbour 테스트를 사용 가능하다.

전환 기간에 행정제재 면제:

- 전환기간 동안에는 GMT 신고서 제출 위반은 행정 제재가 적용되지 않다.
- 결의에서 언급되지는 않지만 OECD 지침에 따르면 MNE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조건으로 (즉, MNE가 GMT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 선의로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함) 이러한 제재 면제가 가능하다.

실질기반 소득 제외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GloBE순소득은 모든 구성기업의 적격 유형자산의 총 장부가치의 5% 및 총 적격 인건비의 5%의 합산금액에 해당하는 실질기반 소득 제외 금액만큼 감소된다. 2024년부터의 Carve-out 전환율이 아래와 같다. :

회계연도	급여 carve-out 비율(%)	유형자산 carve-out 비율(%)
2024년	9,8	7,8
2025년	9,6	7,6
2026년	9,4	7,4
2027년	9,2	7,2
2028년	9,0	7,0
2029년	8,2	6,6
2030년	7,4	6,2
2031년	6,6	5,8
2032년	5,8	5,4

Firm of the Year

of the Year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베트남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 소득세 적용에 관한 결의를 발표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유효됨

결의의 중요한 내용:

2. QDMTT 및 IIR

구체적으로 결의에 QDMT와 IIR의 원칙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안내된다:

QDMTT 규칙

IIR 규칙



적용 대상

다음 대상의 베트남의 구성 기업 :

- ✓ 베트남 내 외국투자 MNE; 및
- ✓ 베트남 MNE

해외에 투자하는 구성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소유권을 보유한 MNE의 **베트남 내 모회사** (최상위모회사, 중간 모회사, 부분 소유 모회사 포함)

추가세액 = (추가세액비율 x 초과이익금액)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있는 경우)

추가세액 = ((추가세액비율 x 초과이익금액)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있는 경우))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QDMTT)

그 중에:

- **추가세액비율** = 15% (최소 비율) (-) ETR.
- **실효 세율 (ETR)** = 과세관할권에 위치한 각 구성 기업의 조정 대상 세금의 합산금액/ 회계연도에 과세관할권의 GloBE 순소득
- **초과이익 금액** = 순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금액 (Net GloBE Income)에서 - 실질 기반 소득 제외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 **GloBE 순소득** = GloBE 소득 (-) 모든 구성기업의 GloBE 손실
- **실질 기반 소득 제외** = 2024년부터 2032년까지의 전환기간동안 carve-out 후: 적격 유형 자산 총장부 가치의 5% (+) 총 적격 급여 비용의 5%.



공식



추가세액 소득 및 할당

- 구성기업의 모든 소득은 **소유 비율을 상관없이 QDMTT가 부과된다.**
- 추가 납부 세액은 구성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소유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 QDMTT에 따른 추가세액 할당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다.
- 추가세는 **GloBE 소득 비율을** 기준으로 각 구성 기업에 할당된다.



신고 의무

QDMTT 및 IIR 납세자는 다음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 GloBE 정보 신고서
- 다른 회계기준으로 인한 차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추가 GMT 신고서
- 마감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 납세자: 베트남 구성기업. 그룹에 **1개 이상의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최종모회사(UPE)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신무의무를 수행할 한** 구성기업을 지정한다
- 마감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첫연도의 경우 18개월)**
- 납세자: 베트남의 모회사.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 소득세 적용에 관한 결의를 발표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유효됨



딜로이트의 관점

- GMT에 대한 결의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기업, 해외에 투자하는 베트남 기업, 그룹을 포함한 적용 범위 내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 내의 기업은 (i) 추가 납세 의무 (ETR < 15%인 경우, 특히 세제 혜택을 적용 받는 기업) 및 (ii) 세금 신고 의무 준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 GloBE 규정에 따른 결의의 계산 및 신고 규정은 베트남에서 새로 적용되는 개념과 용어가 많으므로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기업은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성기업들로 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계산 및 신고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베트남의 QDMTT가 (OECD 동급 검토 및 승인 절차를 통해) GloBE 기준에 따라 적격정책으로 평가될 경우, 베트남에서 영위하는 MNE는 국가의 GloBE 규칙에 따라 추가세액 재계산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규정 준수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비용공제부인규칙 (Undertaxed Payment Rule: UTPR) - GloBE 규칙 에 따른 IIR에 대한 back-stop 규칙은 아직 결의에서 언급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DMTT와 IIR 규칙을 모두 적용하면 베트남내 구성기업의 추가세가 UTPR메커니즘에 따라 제3의 관할권에서 징수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베트남의 과세권을 보장할 수 있다.
- 정부는 본 결의의 규정에 대한 자세한 지침에 관한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적용 범위내의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2024년부터 GMT에 대한 결의이 발표됨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규정 준수에 대한 연구 및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가능한 정책 최적화 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영향평가

베트남 및 그룹의 다른 사업 활동이 영위되는 다른 국가에서 GMT의 영향을 평가함

(2) 정책 추적 및 연구

베트남에서 GMT와 관련 자세한 지침(시행령) 발표 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계산 및 신고 규칙을 잘 이해하도록 연구함

(3) 자원 준비

규정 수행 및 준수를 위한 자원(인력, 도구, 컨설팅 등)을 사전에 준비함

(4) 최적화 계획

추가 세금 신고 준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GMT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가능한 솔루션/ 다른 인센티브를 고려함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손원식 회계사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이상근 회계사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